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mark>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mark> 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	<mark>t</mark> 랍니다. 금융거래 목적	및 고객 기재사항에 따	라 증빙자료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		

고객확인사항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예	아니오
모통	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접근매체(통장/카드/공인인증서/PIN/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접근매체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입니다.		
법인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카드)을 보관·전달·유통한 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가능		
여권 여행자증명서 소지자	① 국내에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가 있습니까?		
	② 여권(여행자증명서) 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본국 신분증, 신용카드, 지로 등 공과금 영수증 등)		
	③ 국내에 직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산세 영수증 등)		
	※ 여권·여행자 증명서 소지자의 비대면 거래는 ①과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설 목적이 명확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만 신규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업체명) (인/서명)